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관모욕죄, 상관명예훼손죄, 초병모욕죄에 대한 벌금형 신설〉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4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기호 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상관면전모욕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상관공연모욕죄의 경우와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 범죄의 법정형에 각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u>금고</u> 에 처한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 ----- ----- <u>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u>금고</u> 에 처한다.	② ----- ----- ----- ----- <u>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

현행	개정안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u>금고</u> 에 처한다.	③ ----- ----- ----- <u>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u>금고</u> 에 처한다.	④ ----- ----- ----- <u>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 -----.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u>금고</u> 에 처한다.	제65조(초병 모욕) ----- ----- ----- <u>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

□ 현행법상 상관모욕죄, 초병모욕죄는 상관 또는 초병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지휘체계 유지 및 완벽한 작전 수행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상관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¹⁾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며 그 보호법익은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임.²⁾

○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는 대통령³⁾,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며,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음.⁴⁾ 또한, 상관모욕죄는 공식 상에서의 직무상 발언뿐만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⁵⁾

- 초병모욕죄에서의 초병은 군의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초병모욕죄는 군의 작전에 경계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병의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완벽한 작전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며,⁶⁾ 초병모욕죄는 상관모욕죄와 달리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⁷⁾

□ 개정안은 상관모욕죄, 초병모욕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은 선고형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해당 신분의 박탈 여부 등이 결정되는데, 현행법 하에서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상관모욕죄, 초병모욕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를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4)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5)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6) 육·해·공군 군사법원, “군형법 주해”, 2015, p.277.

7) 초병은 현실적으로 직무수행 중인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공연한 모욕이라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박찬걸, 「군형법」, 박영사, 2021, p. 266).

저지른 경우, 선택형 없이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죄질이나 책임이 경하여 집행유예나 정상참작 감경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죄질과 책임과 무관하게 군인 등의 신분은 일률적으로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하였으나, ‘모욕’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또는 경멸적 내용이 있으면 대부분 모욕에 해당하므로, 단순 모욕행위로 군인 등이 상관 또는 초병을 모욕하면 일률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⁹⁾이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함.

○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 상 명예훼손죄는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¹⁰⁾, 법정형의 ‘종류’를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바 벌금형을 도입하여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나 군무원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및 제40조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및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도입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박탈되지 않음.

9)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10)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때 현행 상관모욕죄, 초병모욕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상관모욕죄 또는 초병모욕죄에 벌금형을 선택 형으로 신설할지 여부는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 「균형법」의 제정 목적,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현행 판례가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¹¹⁾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상관모욕죄 또는 초병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¹²⁾ 정상참작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없이도 법관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¹³⁾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상관모욕죄의 경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무소방대설치법」¹⁴⁾에서도 상관모욕죄의 법정형

1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602 판결 등

12)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중 다수의견은 국방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설시함.

13)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0조(벌칙)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 조직의 속성상 명예를 다른 가치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군에서 상관의 명예가 손상되면 어느 한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넘어서 군기를 침해하고 군 전체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¹⁵⁾,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 육·해·공군 군사법원, “군형법 주해”, 2015, p.258.